

안전보건관리규정

20 . .

결 재	작 성	승 인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	/

목 차

제1장	총 칙		1~2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9~12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13~15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16~18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19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0~21
제8장	보 칙		22~24
	첨 부		25~46

사 용 자	위원장	간 사							
	/	/	/	/	/	/	/	/	/
근 로 자	근로자 대 표								
	/	/	/	/	/	/	/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강남건영(주) □□□□ 신축공사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현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전근로자, 방문객 등 사업장 내 있는 동안은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관리 :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 ②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정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력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 ③ 산업재해 : 노동 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생긴 신체상의 재해를 말한다.
- ④ 업무상 재해 :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한다.
- ⑤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⑥ 불안정한 행동 :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 즉,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로 인하여 안전의 정도를 위험스럽게 낮추는 행동을 말한다.
- ⑦ 불안정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정되지 않은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및 조건을 말한다.
- ⑧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 조사,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⑨ 협력업체 : 적절한 기술능력, 장비, 및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체로서 당사(현장)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또는 공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 【안전보건 업무의 우선조치】

모든 작업관리는 “안전우선”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 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예방의 책임과 의무】

구 분	내 용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안전활동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보건활동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	전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남건영(주)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당사와 협력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② 작업장 순회점검
- ③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④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⑥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당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⑦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와 협력업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 협력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력업체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7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첨부1]과 같다.

제8조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는 현장소장으로 한다.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계[첨부2]를 실착공일 기준 작성 후 서류철 정리
- ②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1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1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③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 【관리감독자】

- ① 관리감독자는 각 사업장의 직종별 담당자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 지정서[첨부3]를 실투입일 기준으로 작성 후 서류철 정리
- ②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관리자】

- ① 공사금액 50억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 이상)일 경우 안전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안전관리자(1명)를 선임한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첨부4]를 실착공일 기준 14일 이내 관할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각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에 있어서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 가. 개인보호구 미착용 작업시 : 즉각 작업중지 조치 및 건의(재교육 실시 등)
 - 나.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결함 발견시 : 즉각 사용중지 조치 및 건의
 - 다. 안전시설물 미설치시(즉시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함)
 - 1차 : 개선요구서 발송
 - 2차 : 공사중지(해당구간) 건의
 - 3차 : 협력업체 제재조치 및 건의(본사 품질안전실)
 - 라. 기타 사고위험 발견시 : 즉각 시정조치 및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0. 그 밖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관리 정하는 사항

제11조 【보건관리자】

- ① 공사금액 800억 이상일 경우 보건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보건관리자(1명)를 선임한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첨부4]를 실착공일 기준 14일 이내 관할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관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 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① 설치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이상)인 현장
- ② 구성인원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이내의 해당 현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나.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다.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라.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회의 운영 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④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가. 법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3조 【노사협의체】

① 설치대상

-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이상인 현장

② 구성인원

1. 근로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과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나. 안전관리자 1명
-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라.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각 대표자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시행령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의 운영 등

1.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시행령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3.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가.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나.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다.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아.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자.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차.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타.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

제1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작업지휘자】

-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첨부5]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4.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5. 중량물 취급작업
-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 【교육의 구분】

-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으로 구분된다.
- 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 ③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에 따른다.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 ① 현장의 안전교육담당자는 매년 1월중 당해 년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18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담당자는 현장에 지급된 PC(노트북)를 활용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 한다.

- ① 근로자 정기교육
 1. 현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매일, 매주,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면제조건

가.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시간의 50% 면제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 100% 면제

다.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100% 면제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 면제

3. 교육 방법 :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4) 교육 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5)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 관리감독자에게는 반기별 8시간 이상 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가. 집체교육(16시간)

나. 혼합교육(집체교육 8시간 + 인터넷 원격교육 8시간)

다. 우편·통신교육(16시간)

라. 현장교육(8시간)

마. 인터넷 원격교육(8시간)

3. 교육 실시자(기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지정 위탁기관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③ 채용시 교육

1. 현장에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면제조건

가.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시간의 50% 면제

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교육 시간의 100% 면제

다. 특별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교육방법 : 현장교육

4. 교육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5. 채용시 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④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1.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면제조건

가.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시간의 50% 면제

나. 특별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근로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교육방법 : 현장교육

4. 교육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5.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⑤ 특별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는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3. 교육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4.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 작업 및 교육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 집체교육
3. 교육실시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지정 위탁기관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1. 교육대상 건설기계는 [첨부7]과 같다.
2. 교육과정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3. 교육방법 :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4. 교육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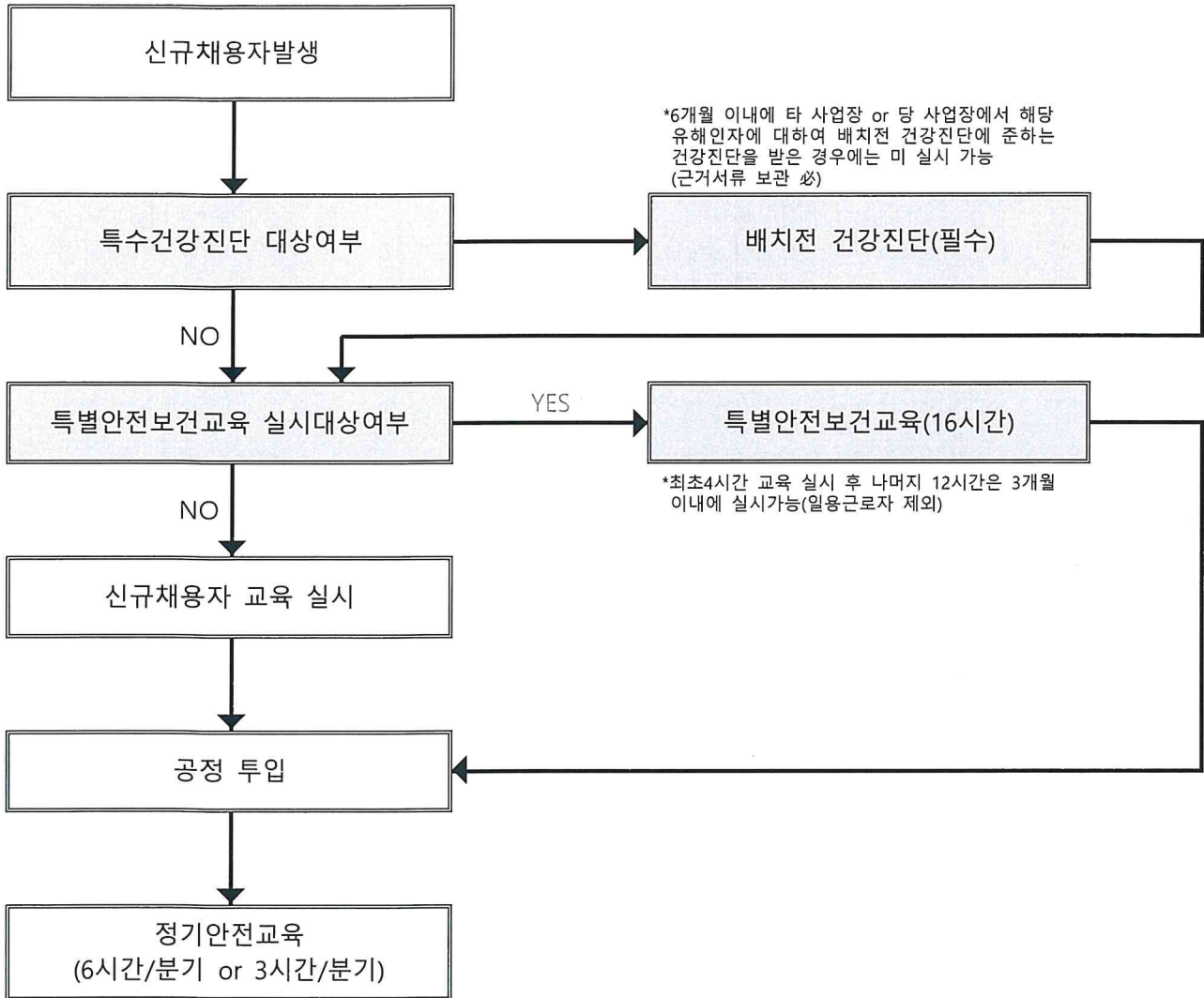
⑧ 물질안전보건교육

1. 현장에 반입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시기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나.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다.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라.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육방법 : 현장교육

4. 교육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5. 물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첨부6]과 같다.

⑨ 안전보건교육 절차



제1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현장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지정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또는 집체교육(6시간)	6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2시간+집체교육4시간) 또는 집체교육(6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10시간+집체교육24시간) 또는 집체교육(34시간)	24시간 이상 혼합교육(인터넷교육8시간+집체교육16시간) 또는 집체교육(24시간)

※신규 - 선임 후 3개월이내, 보수 - 매년 2년기준 전,후 3개월 사이 교육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 ①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중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아래의 기계·기구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5.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6.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7. 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8.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아래의 기계·기구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③ 방호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기계·기구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기계·기구의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 -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실시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실시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실시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② 안전검사 의무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③ 안전검사 처리절차

-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위탁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기준】

- ①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는 현장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중에서 당해 현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험물의 보관】

-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관리감독자가 위험물

취급·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작업중지】

① 사업주의 작업중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한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당해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관리감독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판단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당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리감독자는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및 시설물 등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도 포함된다.
4. 모든 근로자는 제1호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 등은 제2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안전보건수칙】

- ① 현장내 작업간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수칙은 전 공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 사용한다.
-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보건수칙으로 당해 작업담당자 및 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 사용한다.
- ④ 안전보건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근로자는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보건표지】

-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제28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대상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는 현장에 투입 전,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제29조 【작업환경측정】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21]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30조 【작업환경측정 결과 조치】

-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

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 【유해물질 표시】

-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제32조 【유해물질 저장】

-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3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흡연 등의 금지】

-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유해성 등의 주지】

-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기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36조 【보호구의 지급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 보호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 청력 보호구
 11. 진동작업 : 진동 보호구
-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안전인증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작업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등】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 【휴게시설 등】

-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첨부8]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9조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 ① 재해 발생시 처리절차는 [첨부9]과 같다.
- ② 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재해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 지정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긴급조치】

-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119 신고 및 인근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비상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사고조사 및 보고 등】

- ① 재해 발생시 사고조사 및 보고 등은 [첨부9]과 같다.

- ②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시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수립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43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평가방법,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위험성평가 실시】

-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지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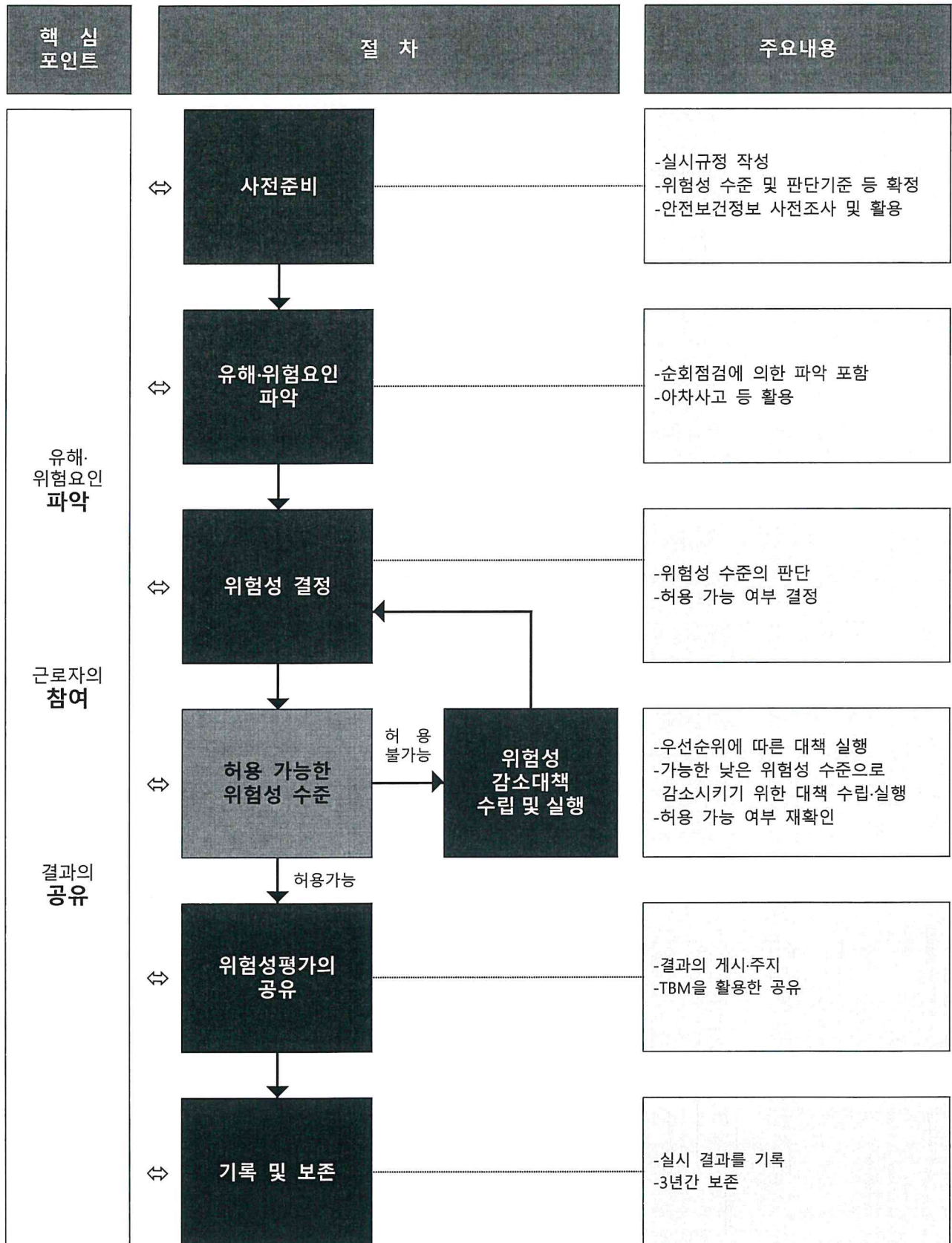
제45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현장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 ②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모든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사업장에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 수시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현장소장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경우 제외한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한다.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라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3. 매 작업일마다 제1,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한다.

제46조 【위험성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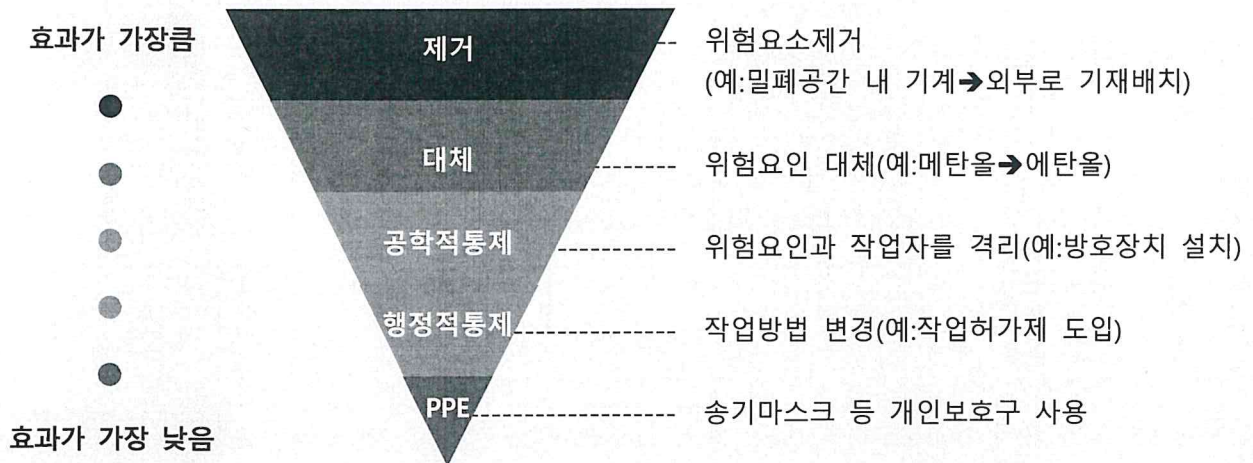
-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② 체크리스트법
- ③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④ 핵심요인 기술법

제47조 【위험성평가 절차】



제48조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수준이 “상” 또는 “중”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제49조 【포 상】**

- ①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첨부10]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분기당 1회 안전점검의 날에 최우수근로자 1명, 우수근로자 1명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안전 우수근로자 추천서”는 해당 업체 관리자가 추천할 수 있다.
- ④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차사고 제보 건수가 많은 근로자를 최우수 근로자로 본다.
- ⑤ 포상 대상자 및 포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 ⑥ 안전관리자는 상품 수령확인서, 우수근로자 포상 사진 등 분기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징 계】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또는 근로자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와 당사 및 현장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 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당사, 제3자 등에 대한 피해를 입힌 자
 5.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51조 【문서의 보존】

구분	보 존 기 한	보 존 서 류	법 규
보존 서류	30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1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 입력자료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2항]
		√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산안법 [제164조6항]
	5년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1항]
		√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
			시행규칙 [제241조2항]
	3년	√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산안법 [제164조5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1호]
		√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3호]
		√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산안법 [제164조1항4호]
		√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5호]
		√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6호]
		√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1항7호]
		√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산안법 [제164조2항]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	산안법 [제36조3항]
			시행규칙 [제27조]

구분	보 존 기 한	보 존 서 류	법 규
보존 서류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산안법 [제164조1항2호]
		√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산안법 [제164조2항]
		√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기록 서류	
	1년	√ 건설공사도급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명세서	산안법 [제72조3항]
	별도 정해지지 않음 ※	√ 순회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 서류	산안법 [제64조1항2호]
		√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류	산안법 [제2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실시 서류	산안법 [제114조3항]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서류	산안규칙 [제38조]
		√ 밀폐공간 긴급 구조 훈련 결과 기록 서류	산안규칙 [제640조]
		√ 그 외 기타 서류	
	※ 별도 정해지지 않은 서류의 경우, 보통 고용노동부 감독시 최근 3개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에 따라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년의 서류보존 기한을 정하여 관리를 권장함		

첨부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첨부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 장 명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202 년 월 일

강 남 건 영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인)

첨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현 장 명 :

공 종 명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월 일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인)

첨부 3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현 장 명 :
공 종 명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자로 임명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7.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월 일

□ □ □ □ 주 식 회 사
현 장 소 장 □ □ □ (인)

첨부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아래의 * 란은 원수급인이나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명)	
	굴착깊이(M)*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m)*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Precast Concrete)조립작업 유무*		다리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향

이 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첨부 5 **작업지휘자 지정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장 비 명 :
업 체 명 :
성 명 :

귀하를 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의한
작업지휘자로 지정하는바 작업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및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작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5.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 작업지휘자 업무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 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2. 신호수(유도자)는 장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지 확인한다.
3. 작업 장소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조명을 유지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4.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5.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6. 로프를 풀거나 덮개 벗기는 경우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한다.
7. 기상 여건(눈,비)을 확인 후 기준에 따라 그 작업을 중지 및 재개한다.

위 작업지휘자 확인 : (인)

202 년 월 일

신축공사 중 공사 현장소장 (인)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흠,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 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을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동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갭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등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등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	-----------------

작업명	교육내용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흘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진동·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라. 건설재해에 방전문지도기 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흘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근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첨부 6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첨부 7 교육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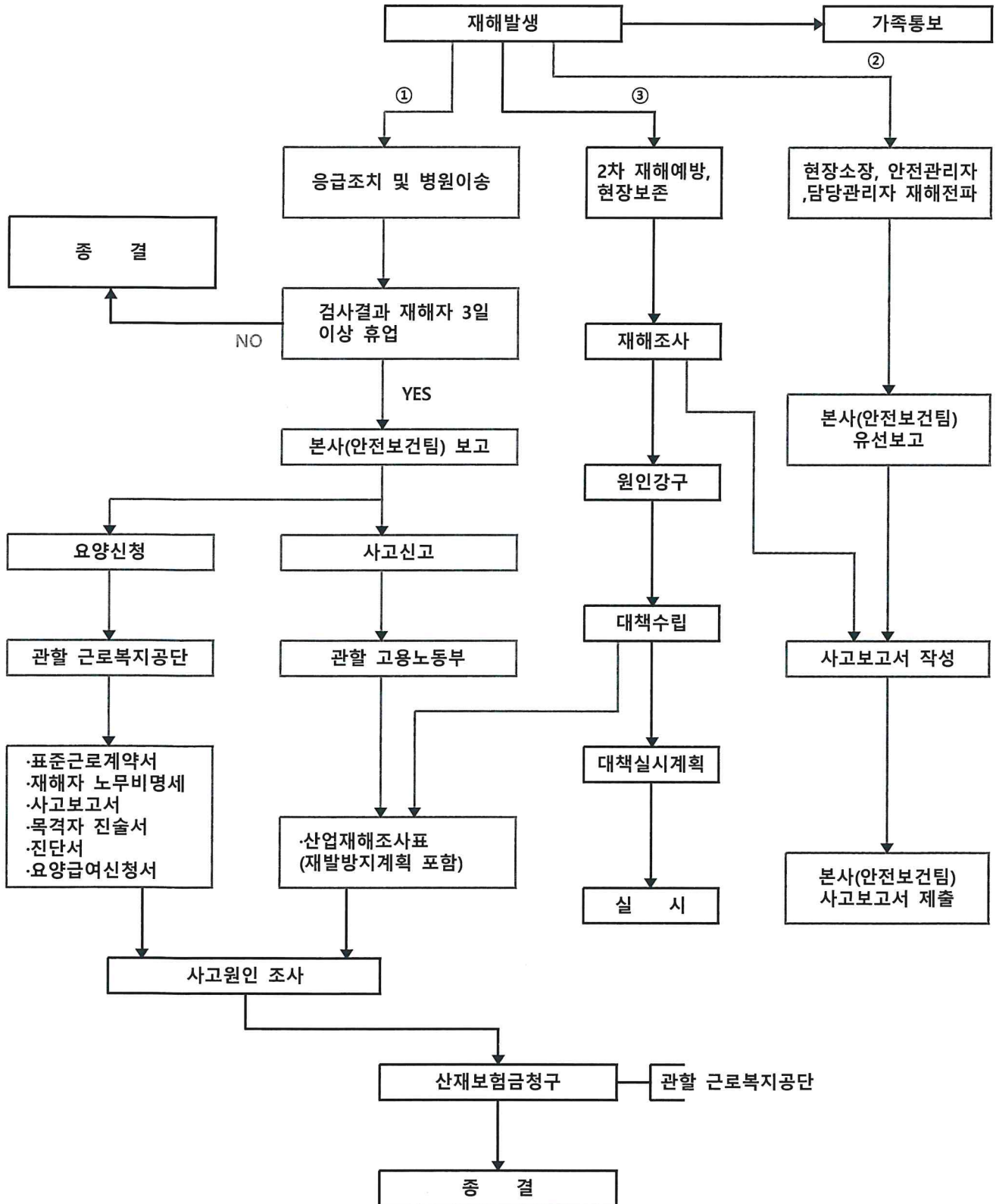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 설 기 계 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슬리트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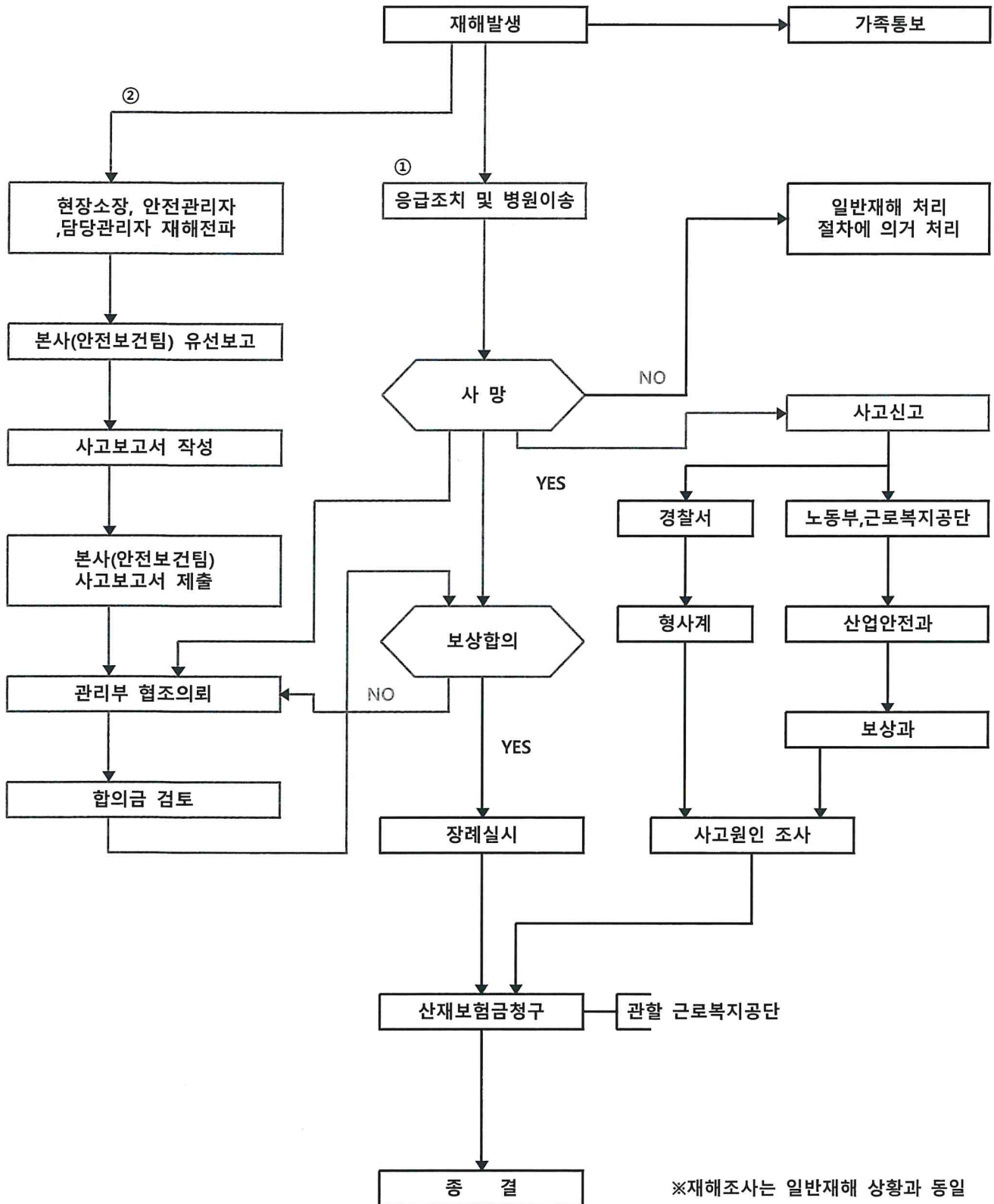
첨부 8	구급용구 품목
------	---------

번호	증 상	비치 약품	비 고
1	구 토	위장약	
2	설 사	지사제	
3	발열, 콧물, 인후통	종합감기약	
4	두통, 생리통	해열진통제	
5	화 상	화상연고	
6	찰과상	상처연고	
7	타박상, 근육통	소염진통제	
8	소 독	과산화수소	
9	세 척	생리식염수	
10	고정, 지형 등	압박붕대, 밴드류	
11	응급 후송	접이식 들것	

첨부 9 일반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첨부 9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첨부 10	우수근로자 점수표
-------	-----------

() 분기 안전 우수근로자 점수표 [□□□□ 신축공사 현장]								
순 번	포상 대상자			항목별 점수				총 점 (100점)
	소 속	직 종	성 명	아차사고 제 보 (5점/건)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제안 (5점/건)	정기교육 참 여 (10점/회)	근로자 추천서 (5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첨부
아차사고 제보,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제안 - 설문식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정기교육 참여 - 정기교육일지
추천서 - 안전 우수근로자 추천서